

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3-8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
임직원	
기타	☆☆☆

2. 조치내용

수사기관 통보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☆☆☆(일반투자자)은 '20.5월 ♥♥♥♥♥♥♥♥으로부터 ○○○○(주)의 제*회차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70억원을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 체결로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
- 이후 '20.6월 잔금 지급 후 동 사채를 동일자에 총 5인에게 전량 매도하여 변경·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된 보고를 전부 이행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

나. 근거법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5조 제20호, 제147조 제1항, 제3항 및 제4항